##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 차입한도액
	합 계	370,430,519	11,112,916
일반회계		325,944,040	9,778,321
특별회계		44,486,479	1,334,594
	기타특별회계	44,486,479	1,334,594
	상수도특별회계	5,052,545	151,576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21,930	3,658
	수질개선특별회계	142,922	4,288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2,367,430	971,023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68,091	29,043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320,028	69,601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8,505	2,355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24,000	6,72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36,799	7,10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797,263	83,918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	70,000	2,100
	기반시설특별회계	38,791	1,164
	담수 어 양식 사 업 특 별 회 계	68,175	2,045

-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46,324천원으로 한다.
- 제 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